

## 디지털 시대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연구\*

박 아 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김 현 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 국 문 초 록

디지털 시대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언론계 현장에서는 기사삭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삭제와 열람차단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사삭제에 대한 현행 법과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시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기사삭제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13년 대법원이 기사삭제의 근거와 요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한 이후 다양한 언론소송에서 기사삭제가 청구되었으며 법원은 이익형량을 통해 삭제여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기사삭제가 정정보도의 보충적 수단이 되어야함을 강조하였고 공인과 공익 관련 기사에서는 언론 자유에 더 가치를 두고 있었다. 시민인식조사 결과 뉴스 이용자들은 범죄 관련 기사를 제외하고는 보도 대상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동의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일반인 보도일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원칙적으로 내용이 진실한 기사는 삭제해

\* 이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의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가 해당 연구의 자료 및 결과 일부를 참고로 하여 발전시킨 것입니다. 논문 보완에 도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ahranpark2@gmail.com](mailto:ahranpark2@gmail.com)

\*\*\* 교신저자, [hyunsuk.kim@snu.ac.kr](mailto:hyunsuk.kim@snu.ac.kr)

서는 안 되며 만약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언론은 자율적으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며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요건과 거부사유가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기사삭제, 기사열람차단, 언론의 자유, 인격권 침해

## 목 차

- I. 서론
- II. 기사삭제에 관한 법률적 논의
  - 1.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
  - 2. 삭제 및 열람차단 관련 법제
- III. 기사삭제 판결 분석
  - 1. 기사삭제와 2013년 대법원 판결
  - 2. 2013년 이후 판결 분석
- IV. 미디어 이용자 설문조사
  - 1. 기사삭제 청구사유에 대한 인식
  - 2. 기사삭제 청구인에 대한 인식
  - 3. 기사삭제 대상인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인식
- V. 논의 및 결론

## I. 서론

아날로그 시대에 시간의 흐름은 인간의 기억에서 정보를 망각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중세시대까지 정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주된 수단은 문서였으며, 언론매체가 발달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정보는 신문을 통해 기록되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전파 및 확산되었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각 언론사 아카이브나 도서관에 자료로 축적되었지만, 일반인들이 아날로그 형태의 아카이브에 접근하여 특정한 과거의 기록을 찾아보는 것은 일상의 경험으로 삼기에는 손쉬운 일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이제 시간의 흐름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한다. 미디어 이용자들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한참 오래된 언론 기사를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언론사 웹사이트와 포털 및 검색사이트, 인터넷도서관 등 각종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필요한 디지털 기록을 빠르게 검색하고 이를 공유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탄생시켰으며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두고 세계 각국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인격권을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논의나 법제화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박진우, 2014). 더구나 잊힐 권리의 주된 청구 대상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의 글로벌 플랫폼사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대결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디지털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재편되고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면서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을 살펴보면 여러 매체 중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2019년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이 2,055건으로 전체 청구건수 3,455건 중에서 58.0%를 차지하였다. 또한 매체유형별 피해구제율도 인터넷신문의 경우 2017년 76.3%, 2018년 77.4%, 2019년 73.1%로 3년째 전체 사건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인터넷언론과 관련된 다툼이 분쟁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매체의 특성상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가 빠르고 넓게 전파되고 있어서 아날로그 시대에 고안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라는 수단이 디지털 시대에 여전히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특히 2021년은 전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언론분야 ADR기구로 자리매김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디지털 시대에 언론분쟁과 관련된 피해구제수단을 되짚어보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외에 언론 현장에서는 어떠한 피해구제방법이 활용되고 있을까. 최근 들어 언론사 기자들은 온라인 기사가 나간 뒤 미디어 이용자들로부터 기사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9년 현직기자 4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4%에 달하는 411명이 기사 전체 내지 일부에 대해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기사삭제 요청을 받았다는 응답 중에서 삭제요청을 받은 뒤 기사를 삭제한 경우는 61.3%(일부삭제 41.7%, 전부삭제 19.6%)에 달했으며, 기사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는 38.7%였다. 기사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도내용의 사소한 오류나 일부 허위를 근거로 하는 삭제요청인 경우(41.2%)가 가장 많았으며, 기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어서 삭제하지 않은 경우(23.7%), 보도내용이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요청된 경우(21.7%), 당사자가 보도에 동의했으나 기사가 나간 뒤 변심하여 삭제요청된 경우(13.4%) 등의 순으로 기자들은 답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려해볼 때 기사삭제청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인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언론에 대한 기사삭제 요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인쇄되거나 송출된 기사를 이용자들이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현출되는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기사삭제 여부를 기자 개개인 또는 편집국 내의 몇몇 데스크의 판단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사삭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언론계 내부에서도 필요하며 기사삭제에 대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리 및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과거 발행된 기사가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검색되어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인격권 보호를 위해 이를 삭제할 것인지 아니면 기사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하여 남겨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Boston Globe)는 2021년 1월 22일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이라는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보스턴 글로브의 과거 기사에 등장한 사람이 온라인 기사를 업데이트하

거나 익명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면 언론인 10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시작’ 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하여 특정 기사를 열람차단하거나 익명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작’ 위원회는 경범죄와 오래된 사건 기사에 대한 신청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며, 공인이나 중범죄 관련 기사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정부기관이나 기업 관련 기사에 대한 신청은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에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에 대해 검토하고 법률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의 성격을 알아보고 유럽에서 비롯된 ‘잊힐 권리’를 둘러싼 법률적 논쟁을 살펴본 다음, 국내에서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제화를 제안한 법률안을 분석한다. 3장에서는 기사삭제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뒤, 기사삭제청구는 이후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4장에서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기사삭제 청구사유, 청구기간 및 삭제 청구인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기사삭제 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와 함께 기사삭제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문에 대해 시민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등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 부분에서는 인격권과 언론 자유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기사삭제와 열람차단을 위한 자율규제 및 법률적 수단을 제안할 것이다.

## Ⅱ. 기사삭제에 관한 법률적 논의

### 1.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

‘잊힐 권리’는 세계 각국에서 학설과 판례를 통해 논의되고 있으나 아

직까지 단일한 개념이 도출되지는 않았다(유충호, 2018). 한국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다양하다. 학계에서는 잊힐 권리란 정보주체가 스스로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검색되는 자신에 대한 정보자료를 삭제하거나 검색차단을 할 수 있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삭제나 검색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소영, 2012), 인터넷 이용자들이 온라인에 남겨둔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정보를 지우는 것이 가능한 권리(이민영, 2013), 개인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최경진, 2012)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률적 개념으로서 잊힐 권리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2014년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의 구글 대 AEPD 판결이었다.<sup>1)</sup>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적법한 정보처리가 있었다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보주체가 공적인 영역에서 행한 역할과 같은 특별한 이유로 인해 공중의 우월한 이익이 정당화될 경우에는 정보 삭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사 원문 자체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기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검색결과에서 현출된 기사 링크를 삭제하라고 구글에게 명했다. 구글 판결은 유럽의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야기시켰다(Youm, & Park, 2016).

유럽에서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 일반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되었다.<sup>2)</sup> 일반정보보호법(GDPR) 제17조는 잊힐 권리를 명문화한

1) Case C-131/12, Google Spain SL v. 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Mario Costeja González, May 13, 2014.

2) GDPR은 일반정보보호규정으로 직역할 수 있으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직접적으

삭제권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합당한 근거 하에 개인 정보 삭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2항). 그러나 잊힐 권리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는바, 동조 제3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 보장 필요성, 유럽연합법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처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공익적 활동이나 공적 권위에 의해 수행된 활동과 관련된 경우, 공공 보건의 영역에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적·과학적·역사적 연구나 통계적 목적의 저장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법적 권리의 보장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온라인에 남아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잊힐 권리를 활용하여 인격권을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다. Cook(2017)은 오래된 기사와 관련된 당사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익적 가치를 능가하는 해악이 있는 기사에는 검색사업자가 표시(flagging)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수정헌법 제1조가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에서는 유럽의 잊힐 권리 논의와 일반정보보호법이 미국의 발행인들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Wimmer, 2018). 잊힐 권리 내지 기사삭제청구권이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국내에서 잊힐 권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명예권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잊힐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사회적 지위, 정보의 성격, 정보의 출처, 공개의 목적, 시간적 요소, 공개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이창현, 2018). 정애령(2019)은 유럽사법재판소와 일반정보보호법(GDPR)에 따르면 잊힐 권리는 적법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경과로 게시된 사실이 부정확 내지 관련성이 없어지거나 과도한 공개일 경우 검색링크를 배제

---

로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정보보호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는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따라서 진실이 아닌 언론 기사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피해구제방안으로서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이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잊힐 권리의 일환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문소영·김민정(2016)은 한국에서는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등 인격권 침해를 구제하는 법망이 꽤 짜여있으므로 링크삭제청구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사삭제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생각건대 디지털 공간의 정보 및 기사삭제에 대한 논의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와 맞닿아있기는 하나, 한국적 맥락에서의 기사삭제청구권은 유럽에서 논의되는 잊힐 권리와는 구별되는 측면이 있다. 유럽의 잊힐 권리는 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정보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논의되는 기사삭제청구권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에 대한 삭제여부를 놓고 논의된다. 따라서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힐 권리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그 요건과 절차를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잊힐 권리는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내용만을 삭제하는 권리로 한정하고, 잊히고 싶은 기사나 사진 등 원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합법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면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잊힐 권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김갑석, 2017). 문재완(2016)도 실질적 잊힘(practical obscurity)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발표 당시에는 적법한 언론보도 내지 이에 준하는 표현물이 시간이 경과되어 계속적인 유통이 부적절해졌을 때 이를 차단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잊힐 권리는 인터넷 중개자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수범자도 인터넷 중개자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를 따를 경우 합법적으로 제공된 언론 보도에 대한 삭제청구권은 잊힐 권리 논의와는 층위가 다른 이슈로 파악될 여지가 있다. 특히 구글 판결에서 잊힐

권리가 원 기사의 삭제가 아닌 링크의 삭제로 구현되었음을 고려할 때 기사 원본에 대해 삭제청구를 하는 것은 잊힐 권리의 구현보다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잊힐 권리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기사삭제가 청구되는 배경과는 밀접한 연관이 있으나 법률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는 구별되는 지점이 있다. 잊힐 권리는 정보 프라이버시 내지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반면, 기사삭제는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는 포털이나 검색서비스사업자 등 미디어플랫폼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차단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기사삭제 및 기사열람차단청구는 언론사에 초점을 맞추어 인격권과 언론 자유의 기본권 충돌 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된다.

## 2. 삭제 및 열람차단 관련 법제

헌행법상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대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삭제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및 불법정보 삭제청구가 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는 개인정보 열람권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구권, 개인정보 처리정지요구권 등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는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삭제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와 이러한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잊힐 권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와는 차이가 있다(김갑석, 2017).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검색엔진 사업자가 관리해야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파일에 담겨있는 정보를 의미하

는 반면, 잊힐 권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온라인에서 검색되는 언론보도나 블로그 게시물, 검색결과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 정보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격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는 이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자신이 게시한 정보를 시간 경과를 이유로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조치 등을 취해야 하고 이를 신청인과 정보 게재자에게 알리는 한편 해당 게시판에도 이러한 조치가 있었음을 알리고(동조 제2항),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취해야 하며(동조 제4항),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는 미리 약관에 명시해야 하고(동조 제5항), 삭제나 임시조치를 취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다(동조 제6항). 또한 제44조의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를 합헌적 수단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sup>3)</sup>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임시조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 도과 시 게시물 복원에 대한 절차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황성기, 2011; 이승선, 2014). 동법 제44조의7은 여러 유형의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있어 명예훼손적 정보나 불법적 개인정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가능하나 온라인 기사의 경우 이러한 심의규제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결정.

이처럼 현행법상 개인정보 삭제청구가 가능한 여러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이용자의 잊힐 권리가 제도적으로 상당히 보장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구태언, 2014).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삭제요청을 위한 일반조항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유럽연합처럼 내용이 적법한 사실인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진웅(2020)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잊힐 권리의 대상을 제한하여 인정하는 방안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제3의 전문기구가 검색엔진에서의 검색결과 삭제를 결정하면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이를 집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언론에 의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잊힐 권리를 현행법상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언론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청구권(제14조), 반론보도청구권(제16조), 추후보도청구권(제17조)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관련 청구권은 1980년대 이후 도입된 수단이다. 이미 형법과 민법으로 언론에 의한 개인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이 있었지만 기존의 구제수단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과다한 비용이 들었으며 피해자가 구성요건을 입증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다(박용상, 1997). 따라서 당시의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1981년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이 도입되었고 이후 1987년 추후보도청구권이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정정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서 언론사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와는 달리 언론이 과실이 없을지라도 보도가 진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한정되므로 언론사의 의견표현이나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평이나 논설 등 가치평가나 의견표시를 하는 기사일지라도 그 내용에 전제 또는 예시 등

을 위한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실적 주장은 정정보도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그 보도내용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반론 또는 반박문 형태로 보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의 보도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진실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후보도청구권이란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 언론사에 그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하지만 기사의 인터넷 유통을 상정하지 않고서 아날로그 시대에 마련된 기존의 보도청구권들은 그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구본권, 2011). 특히 피해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언론중재 결과 반론보도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으며,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언론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안유식·김관규, 2020).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구원파가 중재를 청구한 1만 8천여 건의 기사를 분석한 박흥기(2016)는 이 사건에서 부실한 기사의 품질도 문제였지만 무더기 언론중재가 발생했을 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사수정과 기사삭제가 중재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구원과 측이 기사별 반론이나 정정을 요구한 까닭에 정정보도 과정에서 언론사가 기사를 아예 삭제한 사례도 적잖게 나타났음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다. 언론중재법 제30조는 언론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제1항) 및 침해의 ‘정지’와 ‘예방’(제3항)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손해배상의 한 종류로서 침해정지 및 침해예방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바 언론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이수종, 2016). 즉, 기사로 인한 침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면 언론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삭제청구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정보도청구권도 언론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을 뿐, 보도내용이 진실인 경우거나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기사삭제청구의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정정보도청구는 디지털 시대에 적용되기에 그 시효가 너무 짧다는 주장도 있다. 온라인에서 문제가 된 기사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한 경우가 빈번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정민(2015)은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시효가 너무 단기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간과 무관하게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모든 기사를 정정보도 대상으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한 기사삭제청구 또는 열람·검색차단은 이처럼 명확한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언론조정중재 사례집>에서도 피해자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의 열람·검색 차단을 신청하거나 기사삭제를 청구한 사례가 상당수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최근 3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기사 열람·검색 차단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언론중재위원회의 기사 열람·검색차단 피해구제 현황

| 연도   | 인터넷 매체 대상 |         |               | 기사 열람·검색차단으로<br>구제된 비율(B/A) |
|------|-----------|---------|---------------|-----------------------------|
|      | 청구        | 피해구제    |               |                             |
|      |           | 총 구제(A) | 기사 열람·검색차단(B) |                             |
| 2019 | 2,630     | 1,666   | 509           | 30.5                        |
| 2018 | 2,756     | 1,963   | 622           | 31.7                        |
| 2017 | 2,464     | 1,734   | 614           | 35.4                        |
| 합계   | 7,850     | 5,363   | 1,745         | 32.5                        |

주) 자료출처: 언론중재위원회, 2020. 8.

기사삭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행위인 반면, 기사의 열람·검색차단은 이용자들이 기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언론 자유 측면에서는 기사삭제는 기사의 존재 자체를 영구히 소멸시켜버린다는 점에서 열람·검색차단보다 언론에 대한 제약적 측면이 더 크다. 그렇지만 열람·검색차단도 실질적으로는 미디어 이용자들이 문제가 된 기사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막는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으로는 기사삭제와 거의 동일하다.

기사삭제나 열람차단 관련청구권은 이미 국회에서 4차례에 걸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해 발의된 바 있다(〈표 2〉 참조).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에서 기사삭제나 열람차단을 키워드로 검색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표 2〉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

| 제안일자        | 의안번호    | 주요내용               | 심사진행상태 |
|-------------|---------|--------------------|--------|
| 2016.10.28. | 2002989 | 언론보도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 신설 | 임기만료폐기 |
| 2019.5.21.  | 2020521 | 언론보도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 임기만료폐기 |
| 2020.7.31.  | 2102613 | 언론보도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 소관위심사  |
| 2020.12.1.  | 2105997 | 언론보도 삭제청구권 신설      | 소관위심사  |

4차례에 걸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청구권 중심으로 살펴본다. 2016년 10월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격권 피해구제를 위해 가장 광범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었다(의안번호 2002989). 이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 피해에 대한 구제특례’라는 장을 신설하였는데, 제33조는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언론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언론보도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의 행사 사유는 1) 언론보도 내용이 거짓이고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2) 언론보도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3) 그

밖에 언론보도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중대하게 침해하여 이를 방지하면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었다. 인격권침해자는 삭제, 정정 등 구제가 이루어진 결정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검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검색서비스 결과에서 당해 보도 및 그에 달린 댓글(글, 음성, 영상, 링크 등 포함)이나 동일한 내용의 복제, 링크를 삭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제33조의2). 이 법안은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종합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검색서비스 결과로 현출된 댓글이나 복제글, 링크까지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보통신망법 등 타법과의 충돌이 예상되며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었다.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가 과도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문재완, 2016).

2020년 5월 21일 발의된 개정안(의안번호 2020521)은 열람차단청구권 신설을 제안하였다. 기사의 열람차단이란 ‘인터넷,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의하여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관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제2조제17호의2). 열람차단 청구사유는 1) 언론보도 등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2)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3) 그밖에 언론보도 등의 내용이 인격권을 계속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로 규율하고 청구대상은 해당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규정하였다(제17조의2). 부칙 제2조에서는 법에 따른 열람차단 청구의 적용대상은 법 시행 후 보도 또는 매개된 기사로 제한하였다.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후, 2020년 7월 31일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613)은 이전의 법안과 유사하다. 기사 열람차단에 대한 개념정의(제2조제17호의2) 및 청구사유, 적용대상 등도 매우 흡사하다(제17조의2). 그러나 열람차단 청구사유로서 ‘언론보도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와 ‘언론보도 내용이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는 여전히 그 개념이 모호하여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을 것



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열람차단청구권의 요건 및 행사를 위해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열람차단청구권의 행사대상은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사업자 뿐만 아니라 언론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정보도청구권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열람차단청구를 남용하거나 공익적 사안에 대한 열람차단이 청구되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2월 1일 발의된 개정안은 제17조의3을 신설하여 인터넷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격권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언론사 등에게 보도삭제 및 인격권 침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동조 제1항).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동조 제2항), 언론사는 청구를 수용할 경우 지체 없이 보도를 삭제하고 기타 침해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며(동조 제3항),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동조 제4항). 피해자는 법원에 삭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제26조). 이 법안은 기사삭제 청구대상을 언론사로 삼고 있어서 대상의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언론보도로 계속하여 인격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피해자 요건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Ⅲ. 기사삭제 판결 분석

#### 1. 기사삭제와 2013년 대법원 판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보도나 출판 등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미 보도나 출판이

이루어진 표현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인격권을 이유로 삭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이전에도 법원은 피해자가 기사삭제를 청구한 경우 침해된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이미 삭제를 허용하고 있었다. 더구나 기사삭제청구는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 사건에서도 허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2012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원고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삭제를 허용한 사건이다.<sup>4)</sup> 디스패치는 대기업 대표이사의 극비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을 몰래 촬영하고 녹취하여 기사화했다. 디스패치는 원고가 공적 인물인 만큼 사안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분위기나 대화 내용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관찰지점이 호텔 현관이나 주거지 근처와 같이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원고의 사적인 생활관계가 존재한다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불간섭 상태를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언론이 부당하게 사생활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보았다. 그 결과 법원은 디스패치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당해 기사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처럼 실무에서는 이미 기사삭제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으며 그 근거가 명확해진 계기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 사건은 노컷뉴스가 모 지역방송 전 공동대표가 미국의 정보원 노릇을 했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노컷뉴스는 원고에 대한 기사를 자사 사이트에 58회에 걸쳐 게재하였고 이 기사는 뉴스제공을 제휴한 여러 포털 사이트에도 송고되었다. 원고는 보도내용이 허위이며 기사가 악의적으로 작성되었다며 명예훼손을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기사의 대부분은 공익성이 인정

4) 서울고등법원 2012. 3. 9. 선고 2011나89080 판결.

되며 진실오신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4건의 기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목적이 부인되므로 위법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는 노컷뉴스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기사 4건을 삭제하는 한편 포털서비스사업자인 다음, 네이버 등에 대해서도 기사삭제를 요청하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7일 이내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삭제 또는 삭제요청하지 않은 기사에 대해 매일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up>5)</sup>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총 47건의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sup>6)</sup> 서울고등법원은 기사삭제청구의 요건으로 사전억제 법리를 원용하였다. 이 법리에 따르면 사전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지만 1) 진실이 아니거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2)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될 수 있다.<sup>7)</sup>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배제를 구하는 것과 사전금지를 구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지만 “양자는 특정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고 법원은 사후적인 침해배제청구에도 사전억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적인 존재에 대한 침해배제청구에는 비진실성, 비공익성 요건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지만, 공적자가 아닌 연예인이거나 대기업 경영자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는 비진실성, 비공익성 입증이 명백할 정도로는 요구되지는 않는다고 입증의 정도에도 차이를 두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원고와 피고 모두 상고하였다. 원고의 주된 상고이유는 항소심이 사전금지청구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7가합13290 판결.

6) 서울고등법원 2010. 6. 23. 선고 2008나63491 판결.

7)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여 일부 기사에 대해 삭제 청구를 기각했다며 청구한 기사 전부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기사삭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명예훼손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상당성’ 이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당해 기사가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오신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니 기사가 삭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했다.

2013년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sup>8)</sup> 이 판결의 주요한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은 인격권에 기하여 기사삭제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2005년 인격권에 기초하여 방해배제 또는 금지가 청구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sup>9)</sup>을 원용하였다.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훼손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외에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의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행위 금지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개의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1) 허위이거나 공익에 기여하지 않는 보도로 인해 2)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경우 법원은 언론 자유와의 비교형량을 통해 기사삭제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이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 ‘진실오신상당성’ 기준은 기사삭제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 1988년 대법원 판결<sup>10)</sup>을 통해 확립된 상당성 법리

8)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9)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7 결정.

1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는 명예훼손책임으로부터 발화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조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박용상, 2008).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진실오신상당성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사후적으로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에 대해 학계도 대체로 동의한다. 김재형(2012)은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과 사전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는 그 요건이 동일한 것이 아니며, 금지청구단계에서 언론은 보도내용의 허위 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금지청구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언론기관의 주관적 의도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방해배제청구로서 기사삭제를 청구할 때도 상당성과 같은 주관적 요소는 기사삭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태상(2020)도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인정할 경우 사후적 방해배제청구권도 객관적 권리 방해가 존재하면 되고 가해자의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성 요건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았다.

셋째,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기사가 허위임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기사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궁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어떤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보다 용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언론 측에서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소명자료 제시를 통해 증명하고 피해자는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인과는 달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도 당해 사건의 원고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는 지역방송사의 전 공동대표이자 당해 방송사의 최대 주주이므로 대상판결이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사삭제청구

를 넓게 인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권태상, 2020).

## 2. 2013년 이후 판결 분석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은 기사삭제청구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소개된 기사삭제청구 관련 판결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언론관련 판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구원인은 손해배상이었으며 그 다음이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의 순이었다. 특히 기사삭제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 매년 30건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다(<표 3> 참조). 이러한 청구는 단독으로 행해지는 것은 아니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등이 서로 교차되면서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3> 연도별 언론관련 판결 청구원인

| 청구명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 정정보도   | 154<br>(34.1%) | 190<br>(30.8%) | 181<br>(32.3%) | 178<br>(34.0%) | 182<br>(30.0%) | 165<br>(30.4%) |
| 반론보도   | 17<br>(3.8%)   | 43<br>(7.0%)   | 53<br>(9.4%)   | 37<br>(7.1%)   | 38<br>(6.3%)   | 54<br>(9.9%)   |
| 추후보도   | 0<br>(0.0%)    | 2<br>(0.3%)    | 9<br>(1.6%)    | 1<br>(0.2%)    | 0<br>(0.0%)    | 5<br>(0.9%)    |
| 손해배상   | 263<br>(58.3%) | 339<br>(54.9%) | 275<br>(49.9%) | 267<br>(51.1%) | 335<br>(55.3%) | 272<br>(50.1%) |
| 기사삭제   | 13<br>(2.9%)   | 34<br>(5.5%)   | 36<br>(6.4%)   | 40<br>(7.6%)   | 40<br>(6.6%)   | 38<br>(7.0%)   |
| 보도금지 등 | 4<br>(0.9%)    | 9<br>(1.5%)    | 7<br>(1.3%)    | 0<br>(0.0%)    | 11<br>(1.8%)   | 9<br>(1.7%)    |
| 합계     | 451            | 617            | 561            | 523            | 606            | 543            |

주) 건(비율)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공개된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기사삭제청구가 기각된 판결들은 대체로 보도 내용이 공인에 대한 것이거나

공적 이익과 연관된 것이었다. 특히 공직자 내지 공적 인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도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삭제를 허용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졌다.<sup>11)</sup> 가령, 공기업 부실투자에 대한 보도처럼 공공의 이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청구가 기각되었고,<sup>12)</sup> 외국인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일부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명하였지만 이러한 기사를 유지할 공적 이익을 인정하여 병원 측의 기사삭제청구가 기각되었다.<sup>13)</sup> 군병원에서 형제 군인이 잘못된 진단과 치료를 받아 난치병에 걸렸다는 방송 보도에 대해 법원은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국방부의 정보보도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공적인 사안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나 비판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다시보기 삭제청구도 기각하였다.<sup>14)</sup>

그러나 허위사실을 포함한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할 경우 기사삭제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해군법무관인 원고가 클럽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사삭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원고의 이름은 비실명처리 하였으나 성(姓)과 직업, 나이를 공개하여 주변인들이 원고가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 피해자가 특정되었으며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당해 기사를 삭제하라고 판결하였다.<sup>15)</sup>

기사의 일부삭제만을 명할 경우 원래 기사의 취지가 달라지거나 일부 삭제로는 침해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기사 전체가 삭제되

11) 서울고등법원 2019. 4. 12. 선고 2018나20575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합108418 판결.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8가합35417 판결.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3가합63221 판결.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가합514 판결.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나2007953 판결.

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기사 일부만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그 일부만 삭제할 경우 취지가 달라지거나 잔존 기사가 기사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sup>16)</sup> 이러한 법리는 이른바 ‘땅콩집’ 건축가로 유명한 원고가 설계와 시공을 미루는 바람에 건축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으며 과거에도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취지의 신문 보도에 대한 사건에서도 적용되었다. 1심 법원은 기사 내용이 허위라 볼 수 없으며 기사의 주요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원고의 기사삭제청구를 기각하였다.<sup>17)</sup>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사 일부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사 일부만 분리하여 삭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설령 분리삭제가 가능하더라도 침해상태 해소가 완전하지 않으므로 기사 전체의 삭제 및 포털 사이트에 기사삭제를 요청할 것을 언론사에 명하였다.<sup>18)</sup> 소설가인 원고에 대한 인터넷 기사와 동영상의 문제가 된 사건에서도 법원은 동영상 일부만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지만 분리 삭제가 용이하지 않으며 분리 삭제를 하더라도 침해상태 해소가 완전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영상 전체의 삭제를 명하였다.<sup>19)</sup>

반면, 기사 일부만을 떼어내어 삭제가 가능할 경우 문구 중의 일부를 삭제하라고 명한 판결도 있었다. 201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친일행위자의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남이섬을 매입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에 대해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sup>20)</sup> 원고는 자신이 친일파 후손인 것은 맞지만 자신의 급여와 퇴직금을 모아 남이섬을 구입했으므로 친일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시사저널은 기사 문

16)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선고 2015나2060748 판결.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0. 31. 선고 2018가합32753 판결.

18) 서울고등법원 2019. 6. 14. 선고 2018나2068088 판결.

1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30. 선고 2017가합22446 판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6. 선고 2018가합545698 판결.



구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취재를 통해 보도한 것이므로 진실오신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진실오신상당성은 방해배제청구권의 항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보도내용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어 원고의 명예에 대한 침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침해상태 제거를 위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제목과 특정 문장 등 기사 문구 일부만을 삭제하도록 명하였다.

법원이 기사삭제와 함께 간접강제를 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삭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삭제완료일까지 일별로 부과되는 간접강제금은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모 주간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법원은 허위사실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뉴스사이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당해 기사를 삭제하고 포털 사이트들의 검색 결과에 기사 제목과 주요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삭제요청을 하라고 명하였다.<sup>21)</sup> 특히 법원은 피고들이 기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여 기사 수정 및 삭제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기사삭제 및 포털 검색결과 삭제요청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피고가 이를 임의이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피고가 서버에서 기사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삭제 완료일까지 매일 400,000원씩, 포털 사이트에 검색결과 삭제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요청 완료일까지 잔존 검색결과 1건 당 매일 5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간접강제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사삭제는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보완적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법원은 명시했다. 원고인 변호사가 대학후배인 재판장으로부터 소송의 핵심사항을 귀뜸 받았다고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가합589370 판결.

보도한 신문기사에 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당해 기사의 공익성은 인정되나 적시한 허위사실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성이 없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sup>22)</sup> 특히 주목할 점은 원고의 기사삭제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사의 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해당 기사와 함께 정정보도문이 검색 및 표시되도록 한다면 기사삭제의무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이다. 이처럼 정정보도문이 원 기사와 함께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원고의 명예회복이 가능한다면 굳이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향후 기사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한 이유로 공직자의 기사삭제청구에 대해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검찰 간부가 검찰청의 구내식당 업체변경 및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해 지방검찰청이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해 기사가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 및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반론 보도 및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원고의 인격권 침해가 회복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 결과 기사를 삭제할 정도로 원고의 인격권 침해가 중대한 경우는 아니라며 법원은 삭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sup>23)</sup> 결국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통해 침해된 인격권 구제가 가능하다면 기사삭제는 재판과정에서 보충적 내지 제한적으로 명해져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기사삭제가 예비적으로 청구되더라도 삭제는 필요최소한으로 행해지는 것이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를 균형 맞추는 방법이 될 것이다.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합547119 판결.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가합500622 판결.

## IV. 미디어 이용자 설문조사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범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시민들은 기사삭제에 대한 법률적 지식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사로 인한 피해 및 그에 따른 구제제도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인 1,000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응답자는 (주)마크로밀엠브레인의 패널에서 성별, 연령대, 거주 지역을 고려해 할당표집으로 모집했다. 응답자는 남성이 51.0%, 여성이 49%, 20대 19.2%, 30대 20.7%, 40대 24.8%, 50대 24.3%, 만 60세 이상 11%였다(연령:  $M = 42.93$ ,  $SD = 12.45$ ).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이 19.7%, 인천·경기 31.1%, 대전·세종·충청 10.5%, 대구·경북 9.7%, 부산·울산·경남 15.5%, 광주·전라 9.3%, 강원·제주 4.2%였다.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가 18.2%, 대학 재학 및 졸업이 70.9%, 대학원 이상이 10.9%였다. 조사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이 기사삭제 청구사유, 기사삭제 청구기간 및 삭제 청구인(공인 vs. 일반인 vs. 미성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사삭제 대상인 개인정보 범위와 함께 기사삭제와 관련된 다양한 진술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OLS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응답자의 성별(남성=0, 여성=1), 연령( $\times 10^{-1}$ ), 교육수준(고졸이하=0, 대재이상=1)이 각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이들 개인차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p < .05$ ),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보고했다.

### 1. 기사삭제 청구사유에 대한 인식

먼저, 시민들은 어떠한 사유로 기사삭제를 요청한 경우 언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봤다. 이를 위해 기사삭제를 요청할 만한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응답자가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측정했다(〈표 4〉). 분석결과, 언론 보도가 나간 뒤 기사에서 얼굴이나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 기사삭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93.7%; 약간 동의함 38.8%, 매우 동의함 54.9%).<sup>24)</sup> 이 청구 사유로 인한 기사삭제에 대한 찬성 정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았다( $b = -0.04$ ,  $se = 0.02$ ,  $p = .015$ ).

〈표 4〉 당사자가 요청 시 기사삭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동의 정도

| 기사삭제 청구사유                      | 동의 정도          |                |           |           | 평균 <sup>a</sup><br>(표준<br>편차) |
|--------------------------------|----------------|----------------|-----------|-----------|-------------------------------|
|                                | 전혀<br>동의<br>안함 | 별로<br>동의<br>안함 | 약간<br>동의함 | 매우<br>동의함 |                               |
| 얼굴, 성명 등 개인정보 노출이<br>부담됨       | 1.3%           | 5.0%           | 38.8%     | 54.9%     | 3.47<br>(0.65)                |
|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있는 것이<br>부담됨        | 1.2%           | 7.2%           | 35.8%     | 55.8%     | 3.46<br>(0.68)                |
| 인터넷에서 화제/조롱거리가 되<br>어 삭제하고 싶음  | 1.8%           | 9.7%           | 38.5%     | 50.0%     | 3.37<br>(0.73)                |
| 이혼 등 가족관계 관련 보도를<br>삭제하고 싶음    | 3.6%           | 10.1%          | 41.9%     | 44.4%     | 3.27<br>(0.78)                |
| 파산 등 경제적 문제 관련 보도<br>를 삭제하고 싶음 | 6.2%           | 22.0%          | 51.0%     | 20.8%     | 2.86<br>(0.81)                |
|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음               | 9.0%           | 30.5%          | 34.8%     | 25.7%     | 2.77<br>(0.93)                |
| 범행 관련 보도를 삭제하고 싶음              | 31.5%          | 40.2%          | 20.4%     | 7.9%      | 2.05<br>(0.91)                |

주)  $N = 1,000$ . <sup>a</sup> 전혀 동의안함(=1), 별로 동의안함(=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

응답자의 91.6%는 당사자가 온라인에 자신의 기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기사삭제를 청구한다면 이러한 요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동의

24) 이하 미디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동의’ 비율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약간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비율을 합한 값을 지칭한다. 세부 동의 항목별 응답 비율은 표에 제시되어 있다.

했다( $b = 0.18$ ,  $se = 0.04$ ,  $p < .001$ ). 즉, 기사가 온라인에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성 응답자들이 더욱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높았던 기사삭제 청구사유는 자신의 사진이나 발언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경우(88.5%), 그리고 자신의 과거 별거, 이혼 등 가족관계 문제가 보도된 경우였다(86.3%).

과거에 파산 등 경제적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삭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8%가 동의했다.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단순히 자신에 대한 기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기사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0.5%가 삭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39.5%의 응답자는 이러한 사유로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

과거 범행사실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당사자가 요청한다면 삭제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삭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8.3%에 불과했다. 그리고 성별, 연령별, 교육수준별로 동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b = -0.18$ ,  $se = 0.06$ ,  $p = .001$ ), 나이가 많을수록( $b = 0.11$ ,  $se = 0.02$ ,  $p < .001$ ), 고졸 이하 학력자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자보다( $b = -0.16$ ,  $se = 0.08$ ,  $p = .033$ ) 해당 사유로 인한 기사삭제에 더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 2. 기사삭제 청구인에 대한 인식

기사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복수응답으로 설문했다. 언론에 보도된 당사자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84.4%), 보도된 당사자의 직계가족(68.1%)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경찰이나 검찰(20.2%), 당사자와 무관하지만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반인(19.0%), 당사자의 친구나 동료(13.8%)에게 삭제요청 권한이 있다

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뤄보건대, 시민들은 보도된 당사자나 그 직계가족에 한하여 기사삭제 청구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의 삭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온라인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삭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59.1%의 응답자가 동의했다(〈표 5〉). 동일한 상황에서 언론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55.7%가 동의했다.

〈표 5〉 기사삭제 청구인에 대한 인식: 공인 vs. 일반인

|                             | 동의 정도      |            |           |           | 평균 <sup>a</sup><br>(표준편차) |
|-----------------------------|------------|------------|-----------|-----------|---------------------------|
|                             | 전혀<br>동의안함 | 별로<br>동의안함 | 약간<br>동의함 | 매우<br>동의함 |                           |
| 보도 대상: <u>공인</u>            |            |            |           |           |                           |
| 명예/사생활 훼손한다면<br>온라인에서 삭제    | 12.9%      | 28.0%      | 40.5%     | 18.6%     | 2.65 (0.93)               |
| 명예/사생활 훼손한다면<br>언론사 DB에서 삭제 | 16.1%      | 28.2%      | 37.8%     | 17.9%     | 2.58 (0.96)               |
| 보도 대상: <u>일반인</u>           |            |            |           |           |                           |
| 명예/사생활 훼손한다면<br>온라인에서 삭제    | 5.5%       | 22.9%      | 40.8%     | 30.8%     | 2.97 (0.87)               |
| 명예/사생활 훼손한다면<br>언론사 DB에서 삭제 | 6.6%       | 23.6%      | 39.0%     | 30.8%     | 2.94 (0.90)               |

주)  $N = 1,000$ . <sup>a</sup> 전혀 동의안함(=1), 별로 동의안함(=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

한편, ‘일반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는 보도내용이 진실이더라도 온라인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삭제가 필요하다는 데 찬성하는 응답자는 71.6%였다. 이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 $M = 2.97$ ,  $SD = 0.87$ )는 보도 대상이 공인인 경우( $M = 2.65$ ,  $SD = 0.93$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다( $t[999] = 11.22$ ,  $p < .001$ ). “보도내용이 진실일지라도 일반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훼손하는 기사라면 언론사의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가 필요하다”에 대해서는 69.8%의 응답자가 동의했으며( $M = 2.94$ ,  $SD = 0.90$ ), 이는 보도 대상이 공인일 때의 동의 정도

( $M = 2.58$ ,  $SD = 0.96$ )보다 더 높았다( $t[999] = 12.74$ ,  $p < .001$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민들은 보도내용이 진실일지라도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같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의 경우 공인에 대한 기사보다는 일반인에 대한 기사일 때 기사삭제 필요성이 더 높다고 응답했다. 즉, 시민들은 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 공인보다 일반인이 더 보호받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범죄 기사를 온라인에서 검색이 안 되도록 삭제해야 하는지 설문했다(〈표 6〉). 이에 대해 응답자의 37.7%만이 기사삭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언론사 내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사삭제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 응답자는 이에 비해 조금 낮은 33.6%를 보였다. 두 경우 모두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 정도가 높았다(온라인에서 검색 안 되도록 삭제:  $b = 0.23$ ,  $se = 0.03$ ,  $p < .001$ ;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b = 0.21$ ,  $se = 0.03$ ,  $p < .001$ ).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 기사삭제 요청에 더 관대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6〉 기사삭제 청구인에 대한 인식: 미성년자 범죄자 vs. 성인 범죄자

|                         | 동의 정도      |            |           |           | 평균 <sup>a</sup><br>(표준편차) |
|-------------------------|------------|------------|-----------|-----------|---------------------------|
|                         | 전혀<br>동의안함 | 별로<br>동의안함 | 약간<br>동의함 | 매우<br>동의함 |                           |
| 보도 대상: 미성년자 범죄자         |            |            |           |           |                           |
| 온라인에서 검색 안 되도록<br>삭제 필요 | 33.8%      | 28.5%      | 27.3%     | 10.4%     | 2.14 (1.00)               |
| 언론사 내부 DB에서 삭제<br>필요    | 35.6%      | 30.8%      | 23.6%     | 10.0%     | 2.08 (0.99)               |
| 보도 대상: 성인 범죄자           |            |            |           |           |                           |
| 온라인에서 검색 안 되도록<br>삭제 필요 | 45.4%      | 37.7%      | 14.3%     | 2.6%      | 1.74 (0.80)               |
| 언론사 내부 DB에서 삭제<br>필요    | 49.3%      | 35.0%      | 12.5%     | 3.2%      | 1.70 (0.81)               |

주)  $N = 1,000$ . <sup>a</sup> 전혀 동의안함(=1), 별로 동의안함(=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

한편, 보도 대상이 성인 범죄자인 경우 이들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옛날 기사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는 데 얼마나 동의하는지 물어보았다(<표 6>). 응답자의 16.9%만이 삭제에 동의했다. 같은 상황에서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보다 조금 낮은 15.7%가 동의했다. 성인 범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과거 기사의 삭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나이가 많을수록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 검색 안 되도록 삭제:  $b = 0.15$ ,  $se = 0.02$ ,  $p < .001$ ;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b = 0.14$ ,  $se = 0.02$ ,  $p < .001$ ). 여기에 더해, 성인 범죄자 보도의 경우, 응답자 성별 차이 또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일수록 삭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았다(온라인에서 검색 안 되도록 삭제:  $b = -0.26$ ,  $se = 0.05$ ,  $p < .001$ ;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  $b = -0.27$ ,  $se = 0.05$ ,  $p < .001$ ). 즉, 시민들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남성일수록, 범죄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기사 삭제 요청에 대해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범죄 기사의 경우 성인 범죄자보다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기사일 때 온라인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M = 1.74$ ,  $SD = 0.80$  vs.  $M = 2.14$ ,  $SD = 1.00$ ;  $t[999] = 14.71$ ,  $p < .001$ )과 언론사의 내부 데이터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 $M = 1.70$ ,  $SD = 0.81$  vs.  $M = 2.08$ ,  $SD = 0.99$ ;  $t[999] = 14.34$ ,  $p < .001$ ) 모두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사삭제 대상인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인식

기사에 포함된 다양한 개인정보 항목 중 어떤 것이 삭제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에게 물어보았다(<표 7>). 보도 대상이 공인일 경우,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중에서 삭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족 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79.0%), 의료기록이나 건강상태 등 신체 관련 정보(76.2%), 주거지(71.1%), 재산 및 금융 관련 정보(59.4%),



SNS 등 본인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물(42.9%), 얼굴 사진(40.2%), 나이(36.1%), 이름(35.2%) 순이었다. 즉, 공인일지라도 기사에서 가족 정보나 의료 기록, 주거지와 같은 정보는 삭제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공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은 삭제 필요성이 낮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표 7〉 기사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 중에서 삭제에 동의하는 비율: 공인 vs. 일반인

|            | 기사삭제 청구인       |                |               |               |                               |                |                |               |               |                               | 평균 차이<br>검증<br>(B-A)<br><i>t</i> (999) |
|------------|----------------|----------------|---------------|---------------|-------------------------------|----------------|----------------|---------------|---------------|-------------------------------|----------------------------------------|
|            | 공인(A)          |                |               |               |                               | 일반인(B)         |                |               |               |                               |                                        |
|            | 전혀<br>동의<br>안함 | 별로<br>동의<br>안함 | 약간<br>동의<br>함 | 매우<br>동의<br>함 | 평균 <sup>a</sup><br>(표준<br>편차) | 전혀<br>동의<br>안함 | 별로<br>동의<br>안함 | 약간<br>동의<br>함 | 매우<br>동의<br>함 | 평균 <sup>a</sup><br>(표준<br>편차) |                                        |
| 가족<br>정보   | 7.1%           | 13.9%          | 36.3%         | 42.7%         | 3.15<br>(0.91)                | 4.4%           | 8.6%           | 30.6%         | 56.4%         | 3.39<br>(0.82)                | 10.02***                               |
| 의료<br>기록   | 7.5%           | 16.3%          | 44.5%         | 31.7%         | 3.00<br>(0.88)                | 5.2%           | 12.0%          | 35.7%         | 47.1%         | 3.25<br>(0.86)                | 9.40***                                |
| 주거지        | 9.4%           | 19.5%          | 42.1%         | 29.0%         | 2.91<br>(0.92)                | 6.1%           | 12.8%          | 34.1%         | 47.0%         | 3.22<br>(0.89)                | 11.80***                               |
| 금융<br>정보   | 11.7%          | 28.9%          | 38.0%         | 21.4%         | 2.69<br>(0.94)                | 5.1%           | 15.4%          | 37.2%         | 42.3%         | 3.17<br>(0.87)                | 16.42***                               |
| SNS<br>게시물 | 20.2%          | 36.9%          | 31.6%         | 11.3%         | 2.34<br>(0.92)                | 11.5%          | 23.7%          | 36.2%         | 28.6%         | 2.82<br>(0.98)                | 16.76***                               |
| 얼굴<br>사진   | 25.5%          | 34.3%          | 26.2%         | 14.0%         | 2.29<br>(1.00)                | 7.7%           | 13.9%          | 35.7%         | 42.7%         | 3.13<br>(0.93)                | 25.39***                               |
| 나이         | 24.1%          | 39.8%          | 27.7%         | 8.4%          | 2.20<br>(0.90)                | 9.3%           | 23.2%          | 38.2%         | 29.3%         | 2.88<br>(0.94)                | 22.17***                               |
| 이름         | 28.0%          | 36.8%          | 25.2%         | 10.0%         | 2.17<br>(0.95)                | 8.4%           | 16.8%          | 40.7%         | 34.1%         | 3.01<br>(0.92)                | 26.39***                               |

주)  $N = 1,000$ . <sup>a</sup> 전혀 동의안함(=1), 별로 동의안함(=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 \*\*\*  $p < .001$ .

한편, 보도 대상이 일반인일 경우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중에서 삭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항목은 가족 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87.0%), 의료기록이나 건강상태 등 신체 관련 정보(82.8%), 주거지(81.1%), 재산 및 금융 관련 정보(79.5%), 얼굴 사진(78.4%), 이름(74.8%), 나이(67.5%). SNS 등 본인이 온라인에 작성한 게시물(64.8%)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삭제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해 시민들은 공인과

일반인의 경우 상대적 중요도 순서 차원에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보도 대상이 일반인일 때 공인일 때에 비해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삭제할 필요성을 SNS 게시물보다 상대적 중요도 차원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각 개인정보 항목별로 보도 대상(기사삭제 청구인)이 공인일 때와 일반인일 때의 삭제 동의 정도 자체를 직접 비교해보면, 일반인일 때가 모든 항목에서 다 높았다(<표 7>). 즉, 시민들은 일반인 보도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공인 보도의 경우에서보다 세부항목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기사삭제 대상 개인정보 범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앞서 언급한 8가지 개인정보 항목 전반에 대한 삭제 동의 정도를 공인 보도와 일반인 보도 각각에 대해 계산했다(1 = 전혀 동의 안함, 4 = 매우 동의함; 공인 보도:  $\alpha = .87$ ,  $M = 2.59$ ,  $SD = 0.67$ ; 일반인 보도:  $\alpha = .93$ ,  $M = 3.11$ ,  $SD = 0.74$ ).<sup>25)</sup> 그런 다음, 응답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이 이 두 변수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OLS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검증했다. 분석결과, 공인 보도와 일반인 보도 모두 여성일수록 기사에 포함된 개인정보 삭제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인 보도:  $b = 0.13$ ,  $se = 0.04$ ,  $p = .002$ ; 일반인 보도:  $b = 0.10$ ,  $se = 0.05$ ,  $p = .039$ ). 한편, 일반인 보도의 경우 교육수준의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대학재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가 고졸 이하 학력자보다 개인정보 삭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았다( $b = 0.18$ ,  $se = 0.06$ ,  $p = .005$ ).

마지막으로, 기사삭제에 관한 여러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응답자의 동의 정도를 측정했다(<표 8>). “기사삭제는 보도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삭제해서는 아니

25) 앞의 분석결과와 일관되게, 응답자들은 일반인 보도일 경우 공인 보도일 때보다 개인정보 삭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더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999) = 24.44$ ,  $p < .001$ ).

된다”는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69.7%). 즉, 내용이 진실한 기사의 삭제청구에 대해서는 약 70%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에 대해서는 57.3%가, “기사가 삭제된다면 기사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55.3%가 동의했다. 한편, “기사가 삭제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다”라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49.7%만이 동의했다. “기사삭제청구권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0.7%만이 동의했다. 이는 언론사의 자율적 기사삭제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표 8〉 기사삭제 관련 진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 및 개인별 차이

|                                        | 동의 정도          |                |           |           | 평균 <sup>a</sup><br>(표준<br>편차) |
|----------------------------------------|----------------|----------------|-----------|-----------|-------------------------------|
|                                        | 전혀<br>동의<br>안함 | 별로<br>동의<br>안함 | 약간<br>동의함 | 매우<br>동의함 |                               |
| 내용이 진실한 기사는 어떤 경우에도 삭제해서는 아니 됨         | 6.4%           | 23.9%          | 42.9%     | 26.8%     | 2.90<br>(0.87)                |
|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임             | 8.6%           | 34.1%          | 43.6%     | 13.7%     | 2.62<br>(0.83)                |
| 기사가 삭제된다면 기사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것임     | 11.2%          | 33.5%          | 43.2%     | 12.1%     | 2.56<br>(0.84)                |
| 기사가 삭제된다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임               | 9.8%           | 40.5%          | 40.6%     | 9.1%      | 2.49<br>(0.79)                |
| 기사삭제청구권을 법제화하기보다는 언론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 25.8%          | 43.5%          | 24.3%     | 6.4%      | 2.11<br>(0.86)                |

주)  $N = 1,000$ . <sup>a</sup> 전혀 동의안함(=1), 별로 동의안함(=2), 약간 동의함(=3), 매우 동의함(=4).

한편, 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기사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대해 여성일수록( $b = 0.21$ ,  $se = 0.05$ ,  $p < .001$ ), 나이가 많을수록( $b = 0.05$ ,  $se = 0.02$ ,  $p = .043$ ) 더 많이 동의했다. 아울러, 여성일수록 기사가 삭제된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b = 0.18$ ,  $se = 0.05$ ,  $p < .001$ ), 기사의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 $b = 0.16$ ,  $se = 0.05$ ,  $p = .003$ ),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b = 0.11$ ,  $se = 0.05$ ,  $p = .037$ ) 또한 더 크게 표명했다.

## V. 논의 및 결론

언론관련 피해구제수단도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고 있다. 1980년대 정정보도청구권과 추후보도청구권이 도입됐을 당시에는 이러한 청구권이 획기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며 언론의 반발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로부터 40여년이 지난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피해구제수단이 논의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신문 기사와 방송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삭제의 실효성도 낮았을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과거의 언론 기사가 무한대로 검색되고 발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삭제나 열람차단과 같은 새로운 피해구제수단을 검토해보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언론중재와 재판과정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던 기사삭제에 대해 2013년 대법원이 명시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기사삭제는 실무에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피해구제수단이 되었다. 법원은 허위이거나 공익적이지 않은 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고 현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기사삭제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 관련 보도나 공적 가치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기사삭제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언론 자유와 인격권을 균형 맞추려는 노력이 판례분석 결과 드러났다. 또한 법원은 기사삭제가 특정 표현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정정보도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면 기사삭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미디어 이용자 설문조사는 시민들이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매우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시민들은 기사삭제 필요성에 대해 ‘언론 보도

가 나간 뒤 기사에서 얼굴이나 성명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온라인에 자신의 기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이 부담되는 경우’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기사가 구체적으로 위법한 인격권 침해를 발생시키지 않더라도 디지털 공간에 기사가 존재하여 계속적으로 검색되고 배포된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 기사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통제되지 않은 채 유포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내용의 진실성이 확인된 기사가 과도하게 삭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거부감을 나타냈다. 제시된 여러 진술문 중에서 “기사삭제는 보도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고, 내용이 진실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은 시민들이 기사의 지속적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인 관련 기사보다는 일반인 관련 기사일 때 인격권 침해적인 기사의 삭제 필요성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는 공인 관련 기사의 가치를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과거 범행사실에 대한 보도의 삭제에 찬성한 응답 비율이 28.3%에 그쳤다는 결과 또한 공적 가치가 있는 기사일 경우 시민들이 그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격권을 침해하는 기사에 대해 언론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검색이 안 되는 정도로 차단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 정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가 된 기사가 온라인에서 접근가능하지 않다면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든 아니면 검색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일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대상 인식조사 및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기사삭제와 열람

차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기사삭제의 방법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보충적이고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법원이 판시하였듯이 기사삭제는 “특정한 표현 자체를 존재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문제가 된 기사에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을 함께 실어서 원고의 침해된 인격권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기사삭제는 후순위 수단으로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효과에 관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기사삭제와 열람차단이 같은 효과를 낸다면 기사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영구히 삭제하기보다는 열람차단을 선택하는 것이 표현 및 언론 자유에 대해 덜 제한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기사삭제는 존재했던 기사의 흔적마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우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사삭제의 세분화된 요건 및 기사삭제청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 김재형(2015)은 기사삭제는 사후적 구제수단이지만 삭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는 더 이상 기사를 존재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전적 억제와 마찬가지로의 효과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에도 사전적 금지청구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포맷과 내용을 갖춘 디지털 형식의 기사를 어떤 경우에 삭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공인이 기사삭제청구를 하거나 공적 사안에 관해 삭제가 청구된 경우에는 기사의 가치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는 작성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을 그대로 과거의 기사를 판단하여 과도하게 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령, 피의자에 대한 인권의식이 희박하였던 90년대 초반까지의 언론보도에는 피의자의 실명과 함께 나이, 직업, 자세한 주소까지 드러나 있는데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여 과거의 사건기사 전부를 삭

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실오신상당성이 기사삭제청구를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 없음도 201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명백해졌다. 그 결과 진실오신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언론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을 피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기사삭제를 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당성이 있더라도 기사삭제청구가 빈번하게 행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삭제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법원이 기사 내용 일부분의 삭제를 명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 일부가 타인의 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삭제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기사의 특정부분을 삭제하더라도 기사 흐름이나 문맥상 문제가 없다면 일부 삭제가 가능하겠으나, 일부분 삭제가 기사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다. 특히 방송뉴스의 경우 일부 영상만을 편집하여 잘라내더라도 영상의 흐름 전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일부삭제가 명해지더라도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 일부가 비어있는 기사를 남겨두느니 기사 전체를 삭제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기사 작성 당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언론사가 새롭게 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기사 일부삭제를 명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전체삭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인지, 이로 인해 언론 자유와 인격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숙고가 필요하다. 언론사도 문제가 된 일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기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언론사의 기사삭제 의무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 간의 불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 요구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및 유사 내용을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sup>26)</sup>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삭제나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의 경우 기사 내용이 허위거나 공익성이 없을 때 삭제나 열람차단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매개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특정한 경우 피해자 요청이 없었더라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에 관해 삭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직접 작성한 언론사 못지않게 무거운 주의의무와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제 구글을 비롯한 검색엔진이나 소셜미디어의 아카이브에서 어떠한 정보나 기록을 완벽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디지털 매체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허위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중대하고 현저하다면 기사를 삭제하거나 열람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사가 피할 수 없는 구체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언론사나 언론관련 단체는 내부적으로 기사삭제나 열람차단에 대한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삭제나 열람차단을 결정할 것인지를 규정해두는 것은 언론사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삭제청구에 대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언론사 내부에서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수도 있다. 삭제나 열람차단의 결정과정은 투명하게 행해져야 하고 그 절차와 결정 주체도 미리 명확하게 정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언론사 내부에 위원회를 결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sup>26)</sup>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언론사와 언론관련 단체의 자율규제와 함께 법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기사삭제는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의 일환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언론중재 과정에서도 기사삭제 및 열람차단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삭제나 열람차단이 허용되기보다는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인격권 침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으나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보호수단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법제화는 필요하다. 하지만 기사삭제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에서 보도된 내용을 완전히 삭제하여 역사적 기록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며 기사는 언론사가 생산한 제품이자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언론사의 저작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구글 대 AEPD 판결에서 논의된 잊힐 권리도 기사 원문에 대한 삭제청구가 아닌 링크삭제청구권임을 고려할 때, 기사삭제청구권보다는 기사에 대한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는 것이 언론 자유 측면에서 덜 제한적인 방법일 것이다. 열람차단청구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그 청구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유럽연합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상 삭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참고하여 열람차단청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적절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기사가 삭제되거나 열람이 차단되더라도 온라인 공간에서 기사의 흔적을 영원히 없애기보다는 어떤 이유와 과정으로 기사가 사라졌는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사가 삭제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주제의 기사가 어떤 이유로 삭제되었는지를 기사가 게시되었던 디지털 공간에 남겨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언론사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삭제된 기사 목록과 삭제 내력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개하게 하거나, 기사삭제결정에 대해서도 추후 심사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는 것도 기사삭제나 열람차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이 삭제나 열람차단이 되지 않을 기사를 쓰는 것이다. 언론보도가 디지털 메모리에 영원히 남는 상황 속에서 언론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만약 침해적 요소가 있다면 자율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디지털 시대 언론의 새로운 책무(duty)가 될 것이다.

## ■ 참고 문헌

- 구본권 (2011).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 현황. <언론중재>, 2011년 여름호, 7-19.
- 구태언 (2014). 잊힐 권리의 국내법상 검토 및 발전방향. <정보법학>, 18권 3호, 1-21.
- 권태상 (2020). 명예훼손과 기사삭제청구권: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9권 2호, 233-263.
- 김갑석 (2017). 유럽에서의 잊힐 권리의 전개와 한국에서의 법제 제도화의 방안. <유럽헌법연구>, 25호, 53-78.
- 문소영·김민정 (2016).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호, 151-182.
- 김재형 (2012). <언론과 인격권>. 서울: 박영사.
- 문재완 (2016). <잊혀질 권리: 이상과 실현>. 서울: 집문당.
- 박아란·조소영·김현석 (2019). 디지털 시대의 잊힐 권리와 기사 삭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박용상 (2008). <명예훼손법>. 서울: 현암사.
- 박용상 (1997). <언론과 개인 법익: 명예, 신용, 프라이버시 침해의 구제 제도>. 서울: 조선일보사.
- 박진우 (2014). 이른바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조명. <세계헌법연구>, 20권 2호, 155-183.
- 박홍기 (2016). 세월호 참사 보도에 대한 언론피해구제 연구: 구원파와 관련된 언론중재신청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0권 4호, 343-363.
- 안유식·김관규 (2020). 언론보도피해구제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와 법원판결의 비교분석. <언론과학연구>, 20권 2호, 182-219.
- 언론중재위원회 (2020). <2019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9). <2018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8). <2017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7). <2016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6). <2015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5). <2014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4). <2013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중재위원회 (2013). <2012년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서울: 언론중재위원회.
- 유충호 (2018). 잊힐 권리의 민사법적 쟁점과 입법론적 연구. <중앙 법학논문집>, 42권 1호, 111-164.
- 이민영 (2013). 이른바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총>, 20집 1호, 65-92.
- 이수중 (2016). 기사삭제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157권, 39-74.
- 이승선 (2014). 언론법제와 규제: 표현이 자유 논의의 흐름 및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권 4호, 473-498.
- 이창현 (2018).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 관한 연구. <법조>, 67권 1호, 101-149.
- 조소영 (2012). 잊혀질 권리: 정보의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법리 검토. <공법연구>, 41권 2호, 433-457.
- 정애령 (2019). 잊힐 권리 실현방안의 모색: 언론피해구제방안으로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고찰. <미디어와 인격권>, 5권 2호, 143-177.
- 주정민 (2015).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질 권리. <언론과 법>, 14권 2호, 39-62.
- 최경진 (2012). 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 <정보법학>, 16권 2호, 97-120.
- 최진웅 (2020. 9. 7).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162호,
- 황성기 (2011).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권 3호, 163-191.
- Cook, H. (2017). Flagging the middle ground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 combatting old news with search engine.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Law*. 20, 2-50.
- Wimmer, K. (2018). Free expression and EU privacy regulation: can the GDPR reach U.S. publishers? *Syracuse Law Review*. 68, 548-577.
- Youm, K. H. & Park, A. (2016).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European Union law: data protection balanced with free speech?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3(2), 273-295.
- Greenberg, Z. (2021, January 22). Boston Globe Launches ‘Fresh Start’ Initiative: People Can Apply to Have Past Coverage about Them Reviewed. *Boston Globe*, URL: <https://www.bostonglobe.com/2021/01/22/metro/boston-globe-launches-fresh-start-initiative-people-can-apply-update-or-anonymize-coverage-them-thats-online/>

■ ABSTRACT

---

## Removing or Blocking News Articles as a New Remedy in the Digital Era

Ahran Park

Senior Researcher, Korea Press Foundation

Hyun Suk Kim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request for the deletion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has been steadily raised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rights in the digital era. Such requests for deleting news storie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media field, and the removing or blocking of news articles are already being used actively in media mediation processes.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laws and court decisions for removing news articles while reviewing the validity of such requests to suggest a direction for improvement. After the Supreme Court explicitly determined the grounds and requirements for deleting the news, courts have determined whether to remove articles through balancing personal rights and freedom of the press. The court, however, emphasized that the deletion of news articles should be a supplementary means for the right of correction and put more value to freedom of the press for stories relating to public figures or public interest.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media users showed a great concern about the existence of news stories in digital space, yet they were reluctant towards the permanent elimination of truthful articles. Thu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the press should autonomously prepare guidelines for removing news stories. Moreover, clear requirements for requesting to block articles and the reason for rejection against such requests need to be established.

Keywords: Removing News Article, Blocking News Article, Freedom of the Press, Invasion of Personal Right

[ 논문투고일 2021. 3. 15.    논문수정일 2021. 4. 8.    게재확정일 2021. 4. 8. ]